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 결과

1992. 6. 16

가.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문교사회위원회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2년 6월 2일

○ 회부일자 : 1992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79회 임시회

○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1992. 6. 15)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교육청 관리국장 김근학)

가. 개정이유

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는 公示地價를 적용하여 재산가격을 산정함에 따라 일부지역의 공유재산 대부(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로인한 사용자의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향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유재산대부료(사용료, 변상금포함)가 전년도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부료를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함.

증 가 율	대부료 인상율
10 ━━ 20 %	10 ━━ 13 %
20 ━━ 50 %	13 ━━ 16 %
50 ━━ 100 %	16 ━━ 19 %
100 ━━ 200 %	19 ━━ 22 %
200 ━━ 500 %	22 ━━ 25 %
500 % 이상	25 % 이상

○ 대부료 산정은 1990. 11. 10이후의 대부료 결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만)

공유재산의 대부(사용)료는 公示地價를 적용하여 재산가격을 산정함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1990. 6. 11.) 제92조 제3항의 개정으로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사용료의 산출액이 전년도 사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대부료를 단계적으로 하향조정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된 시점인 1990. 11. 10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보상금 포함)의 결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트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가. 개정 조례안

나. 신구문 대비표